

의안번호	2206144
의 퇴 인	김우영 의원
회 답 일	2024. 12. 24.
추 계 번호	24B56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 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u>연차평가(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 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 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 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음</u>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2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 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실시(안 제12조제2항)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연차평가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11월)에 따르면, 연도별 과제 수는 2021년 74,745개, 2022년 76,052개 등으로 연 7만여건 수준임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도별 과제 개수

(단위: 개)

구분	`18	`20	`21	`22
신규과제 수	26,894	34,458	30,900	30,577
계속과제 수	36,803	39,043	43,845	45,475
계	63,697	73,501	74,745	76,052

자료: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11월)

-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¹⁾에서 실시한 평가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평가 현황

(단위: 건)

평가종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연도	21	22	23	21	22	23	21	22	23	21	22	23
NRF	153	141	122	50	57	55	179	161	274	74	99	76
IITP	302	274	244	12	62	33	177	177	152	2	7	0
COMPA	27	35	35	8	10	13	10	12	20	0	1	1
INNO	108	93	90	4	7	3	62	68	75	5	9	2
계	590	543	491	74	136	104	428	418	521	81	116	79

주: 평가 건수는 실제 과제 수가 아니며, 기관별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그룹을 구성한 횟수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한국연구재단(NRF),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INNOPOLIS, 이하 INNO)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실시 방법은 ①평가단 구성 → ②평가 시행 → ③평가결과 심의·확정 → ④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의 순으로 진행되고, 평가의 종류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발표·토론·서면·현장평가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함([참고자료] 평가방식별 평가 절차 첨부)
 -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 시행 전 사전검토(요건, 중복성, 참여제한 확인, 기술 우수성 등)를 시행하는 경우도 존재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²⁾을 준용하여 평가 유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정해 달리 지급하고 있으나, 통상 과제평가위원은 5~7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 1인당 서면평가 4~5만원(과제 1개 당), 대면평가 20만원(1일 4시간 기준, 초과 시 40만원~)을 지급함
 - 직접 지급하는 평가비용 외에도 평가단 구성 소요 경비 및 교통비가 소요(일부 기관 기준 존재)되며, 간접적으로는 전문기관 평가 관리인력인건비, 회의비(식비 등)·회의장 임차료 등이 추가로 소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별 평가 경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한국연구재단 (NRF)

구 분		비 용	지급기준	
평가단 구성 소요경비	추천비	40,000	20명 이하	
		60,000	21~30명	
		80,000	31~40명	
		100,000	41~50명	
		50,000	50명 초과 (50명 단위로 추가)	
	군구성비	100,000	50명 이하	
		30,000	50명 초과(50명 단위로 추가)	
평가수당	온라인 서면평가	40,000	과제 1건당	
	패널평가 (토론/ 발표평가)	200,000	4시간 이하	위원장 수당 5만원 추가 지급 가능
		400,000	4시간 초과	

주: 평가 수당에는 위원들의 교통경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통경비는 내부 예산운용 지침 등에 따라 지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부 예산운용 지침 등

－ ②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COMPA)

비용	구분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평가비	서면평가 (우편, 온라인 평가)	40,000원	과제 1편/인 : 개인 혹은 소규모 연구과제		
		50,000원	과제 1편/인 : 집단(공동) 혹은 대규모 연구과제 및 영문 연구과제		
		\$300	과제 1편/인 : 해외 석학 평가		
	패널평가 (예비발표(면접)· 토론·합숙·결과중 합·현장·이의제기 평가 등)	200,000원	4시간 미만	· 위원장수당 5만원 추가 지급	
		300,000원	4~8시간 이하		
		400,000원	8시간 초과		
교통비	개최지	지역	교통비	지역	교통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20,000원	경북, 대구, 광주	100,000원
		강원(영서)	40,000원	경남, 울산, 포항, 전남	130,000원
		충남(세종), 충북	60,000원	부산	140,000원
		대전, 강원(영동)	70,000원	제주	190,000원
		전북	90,000원		
	수도권 외 지역	평가개최지 (시,도) 시내	20,000원	평가개최지 (시,도) 시외	실비적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③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평가위원이 평가에 소요한 시간당 10만원 수준으로, 1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교통비 별도)

- 개정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차평가를 도입할 경우,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평가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관리전문기관별로 평가 실시 방식이 다양하고, 현재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 방식이 과제별 평가 단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한 연차평가에 소요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가 다르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대면평가의 경우 과제 규모 및 복잡도 등에 따라 1개의 과제를 3~5일간 평가하거나, 여러 개의 과제를 모아서 평가하는 등 방식이 다양하여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평가단 구성 횟수, 규모, 심사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평가방식별 평가 절차³⁾

□ (서면평가) 평가자가 자료(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서를 작성

- 사전 검토는 신청자격 구비 여부, 참여 제한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서면평가와는 구별

< 서면평가 예시 >

- 대상: 평가대상 과제수가 많은 경우 또는 대면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절차:

전문기관	평가단(평가위원)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 평가계획 수립 - 사전 검토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에게 자료 제공	- 자료 검토 - 평가의견서 작성 - 전문기관에 평가의견서 및 기타 자료 제출 - 위원별 의견 취합 및 최종의견서 작성 - 종합결과 도출	평가단의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평가결과 통보

□ (대면(발표)평가) 제출된 자료와 연구개발과제 책임자의 발표·질의 답변 및 평가위원 간 토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의견서 작성

< 대면(발표)평가 예시 >

- 대상: 대부분의 과제 평가에 적용
- 절차:

전문기관	평가단(평가위원)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 평가계획 수립 - 사전 검토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에게 자료 제공	- 자료 검토 - 피평가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위원간 토의 - 평가의견서 작성 - 종합결과 도출	평가단의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결과 통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 (온라인평가) 평가자가 별도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로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서 작성

○ 온라인 시스템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평가 방식 포함

< 온라인평가 대상 >

국내외 전문가 및 해외석학 등 시간/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 대면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대면평가를 대체하여 실시
- 신청 과제 수가 과다하여 대면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학문 분야가 상이한 과제의 대면평가 이전에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때 등

□ (현장평가)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의견서 작성

< 현장평가 예시 >

- 대상: 연간 연구비가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 또는 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보 정도의 확인이 필요한 과제와 현장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등

- 절차:

